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15-33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조경엽



정책연구 15-33

2015. 12.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조경엽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환경 경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공저, 2013),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공저, 2013),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0),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공저, 20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공저, 2011),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공저, 2011),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 (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Energy Economics, 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공저, 2009),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공저, 2008),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공공경제, 2007), 『2003~2005년 세계개편 평가: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공공경제, 2006), 등이 있다.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1판1쇄 인쇄 | 2015년 12월 27일

1판1쇄 발행 | 2016년 1월 7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57-8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00692)

CONTENTS

요약	5
I. 서론	26
II. 상속·증여과세 현황과 문제점	28
1.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문제점	28
2. 상속·증여세수 현황과 문제점	35
3.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 제도의 문제점	40
III.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	47
1. 개요	47
2. 분석결과	51
IV. 결론	59
참고문헌	62
부록	64

표
목
차

[표 1] 상속·증여세율	28
[표 2]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국제비교	29
[표 3] 우리나라의 상속공제제도	31
[표 4]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제도	31
[표 5] 가업상속공제제도	32
[표 6] 주요국의 상속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33
[표 7] 주요국의 증여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33
[표 8]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	34
[표 9] Revenue for Transfer Taxes	37
[표 10] 상속재산의 이중과세 사례	40
[표 11] 상속세제 개편안	48
[표 12]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신고현황	50
[표 13] 사회회계행렬 2013년	51
[표 14] 시나리오별 생애 변화	54
[표 15]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국민경제 변화(연평균)	57
[부록 표 1] 상속세 결정 현황 및 유효세율	64
[부록 표 2] 증여 결정 현황(2013년)	65

그
림
목
차

[그림 1] 국가별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분포도	30
[그림 2] 상속세 과세자수와 과세비율	35
[그림 3] GDP대비 상속세수입	36
[그림 4] 총세수입 대비 상속세수입	36
[그림 5] 상속세 부담 비중과 유효세율	38
[그림 6] 증여세 부담비중과 유효세율	39
[그림 7] 생애 노동과 여가시간 분포	52
[그림 8] 생애 소비 및 소득변화	52
[그림 9] 시나리오별 생애 소비변화	55
[그림 10] 시나리오별 생애 노동시간 변화	55
[그림 11] 시나리오별 생애 저축변화	55
[그림 12] 시나리오별 노동시간 변화	57
[그림 13] 시나리오별 노동소득 변화	57
[그림 14] 시나리오별 자본소득 변화	58
[그림 15] 시나리오별 경상수지 변화	58
[그림 16] 시나리오별 소비 변화	58
[그림 17] 시나리오별 GDP 변화	58



1. 서론

▶ 상속·증여과세의 찬반 논쟁

- 찬성론자들은 상속권을 국가가 부여한 제도로 인식하고 불로소득에 따른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균등을 위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반대론자들은 상속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식하며, 상속세는 삶의 우등생을 역차별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진시키고 저축과 투자를 위축시켜 하향평준화만을 초래한다는 입장임.
 -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그리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의 이전에 차별을 없애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음.

- 상속과세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상속과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상속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고 공제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상황임.
-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불합리한 상속세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할 경우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식 개편과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식 개편을 고려하고 있음.
-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캐나다와 같이 상속을 하는 시점을 자본의 양도로 간주하고 양

도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개편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상속세제를 개편할 경우 생애소득·소비·노동의 변화와 GDP, 고용, 소비 및 투자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세대중복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있음.

II. 상속·증여과세 현황과 문제점

1.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문제점

가) 상속·증여세율

▶ 상속·증여세율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국가의 평균 26%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임.
 -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세율은 65%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보다 높음.
- 상속과세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국부유출을 막고 성장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캐나다, 호주, 멕시코, 스웨덴 등 14개국이 폐지하였으며, 중국은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국가들은 21개국에 달함.
 - 상속세율을 10%이하로 소득세율보다 낮게 부과하는 국가에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브라질, 대만 등 9개국이 이에 속함.
 - 상속세율이 10%를 초과하지만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등 11개 OECD국가와 1개의 비OECD국가를 포함하여 총 12개 국가가 있음.
-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형평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2개국이 있음.
-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3개국뿐임.

▶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의 문제점

- 소득세와 상속세의 격차가 12%p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음.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국제비교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 폐지 (또는 미시행)
일본(55%)40%) 한국(50%)38%) 헝가리(18%)16%)	프랑스(45%) 미국(40%)≈39.6%)	상속세율 10% 초과 영국(40%(45%)) 네덜란드(20%(52%)) 스페인(34%(45%)) 독일(30%(45%)) 벨기에(30%(50%)) 아일랜드(33%(41%)) 칠레(25%(40%)) 핀란드(19%(31.75%)) 덴마크(15%(25%)) 슬로베니아(14%(50%)) 남아프리카(20%(40%))	캐나다('72) 호주('79) 이스라엘('81) 뉴질랜드('92) 포르투갈('04) 슬로바키아('04) 멕시코('05) 스웨덴('05) 오스트리아('08)
		상속세율 10% 이하 그리스(10%(42%)) 터키(10%(35%)) 아이슬란드(10%(31.8%)) 노르웨이(10%(25.75%)) 폴란드(7%(32%)) 이탈리아(4%(43%)) 스위스(칸톤별<13.2%)) 브라질(8%(27.5%)) 대만(10%(40%))	체코('14) 에스토니아(미시행) 인도('85) 러시아('06) 싱가포르('08) 중국(미시행)

자료: 김재준(2014)에서 재인용

나) 공제제도

▶ 공제수준의 국제비교

- 배우자와 1자녀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점은 약 10억 원으로 영국 5.6억 원보다 높으나 미국 55억 원, 독일 17억 원, 일본 23억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합산 연도가 상이하여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배우자와 1자녀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여공제는 최대 6.5억 원이며, 미국은 55억 원, 독일 12억 원, 일본 1,10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주요국의 상속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구분	국가	면세점	1인당 GDP 배수	주요 공제
상속공제	한국	10억₩	39.3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최소 5억₩)
	미국	5,340,000\$ (55억₩)	101.5	통합한도(증여 포함, 5,340,000\$) 배우자공제(한도 없음)
	영국	325,000 (5.6억₩)	13.2	325,000까지는 0% 배우자공제(전액) 매년 3,000 증여액은 상속시 미포함
	독일	1,207,000 € (17억₩)	36.5	배우자공제(755,000 €) 자녀공제(452,000 €)
	일본	2.3억¥ (23억₩)	56.6	기초공제(최소 5천만¥) 상속인당 1천만¥ 배우자공제(최소 1.6억¥)

자료: 김재준(2014)에서 재인용

주요국의 증여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구분	국가	면세점	1인당 GDP 배수	주요 공제
증여공제	한국 (10년 합산)	6.5억₩	26.5	배우자공제(6억₩) 자녀공제(1인당 5천만₩)
	미국 (평생 합산)	5,340,000\$ (55억₩)	101.5	통합한도(증여 포함, 5,340,000\$) 배우자공제(한도 없음) 기초공제(수증인 1인당 13,000\$)
	독일 (10년 합산)	900,000 € (12억₩)	36.5	배우자공제(500,000 €) 자녀공제(400,000 €)
	일본 (1년 합산)	110만¥ (1,100만₩)	0.3	기초공제(110만¥)

자료: 김재준(2014)에서 재인용

주요국의 기업상속공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공제 금액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 10년: 100억 원 • 15년: 300억 원 • 20년: 500억 원 한도: 500억 원	기업상속재산 공제의 합산 공제액은 기업상속재산 기본공제액 \$625,000과 기업상속 공제 최고 한도 \$675,000을 합산 한도: \$1,300,000	한도 없음	비상장주식: 주식과세가액의 80% 납세유예 한도: 발행주식의 2/3	100% 공제 • 지배기업의 유가증권 • 경영권이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 50% 공제 · 상장회사 주식 • 사업용 토지 · 건물, 기계, 설비

주: 정승영(2013)과 김재준(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등 주요국은 가업상속의 공제금액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음.

▶ 공제제도의 문제점

-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율은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이중과세의 문제가 심함.
- 주요 국가에서 공제제도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한 것임.
- 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공제금액을 작게 하는 이유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소득세를 회피했을 거라는 가정이 전제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음.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5천만 원)가 상속의 일괄공제 5억 원에 비해 매우 낮아 사전증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증여공제를 확대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 높음.
- 인적공제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낮아 인적공제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제금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
- 상속세과세자 비율은 2005년에 0.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2.4%에 달함.
- 가업상속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공제액에 한도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상속·증여세수 현황과 문제점

가) 상속세부담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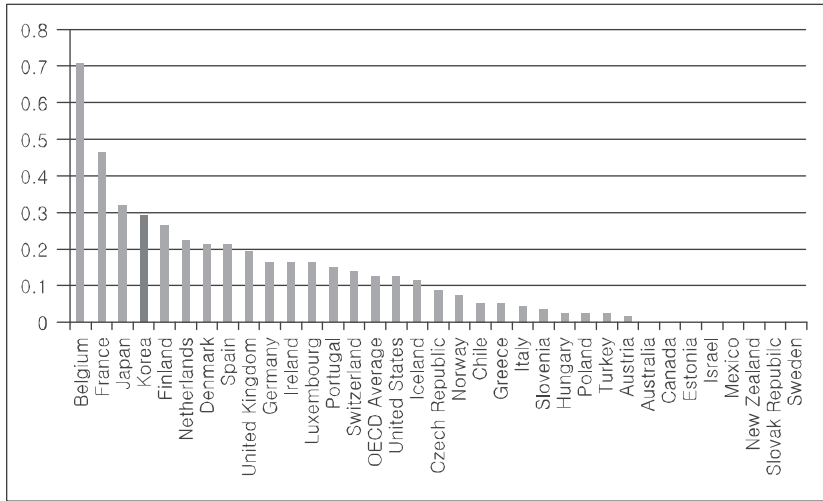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부담 수준이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GDP대비 상속세수입 비중은 0.29%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 상속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은 세수입을 얻기 위해 국부유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GDP대비 상속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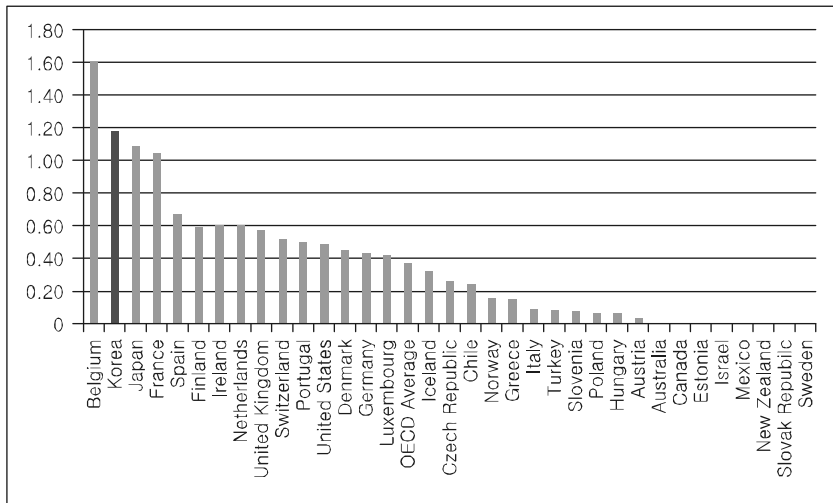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총세수입 대비 상속세수입

(단위: %)



자료: OECD

나) 상속·증여세의 결정 현황 및 유효세율

▶ 상속세 결정현황

- 2013년 과세대상 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억 원 이상인 피상속인 비중은 10.4%에 달함.¹⁾
-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넘는 슈퍼리치의 비중은 4.7%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500억 원을 넘는 피상속인 비중은 0.1%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추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계층의 세부담은 76.1%에 달하고, 10억 원 이하의 계층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3.9%를 차지하고 있음.
- 규모별로는 100억 원~500억 원의 계층이 31%를 부담하고 있으며 5억 원 이하의 계층의 세부담은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 산출세액 기준으로 추정한 유효세율은 최저 5.2%에서 최고 47.3%에 달해 강한 누진적인 세부담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증여세 결정현황

- 증여세 대상 인원 109,644명 중 85%이상이 증여재산가액 3억 원 이하에 속하고 있으며, 30억 원 이상은 1.3%에 그치고 있음.
- 재차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추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계층의 세부담은 35.6%에 달하고, 1억 원 이하의 계층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 산출세액 기준으로 추정한 유효세율은 최저 5.6%에서 최고 47.3%에 달해 누진도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음.
- 상속가액이 1억 원 이하의 유효세율은 7.3%에 달하다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50억 원 초과 시 유효세율은 47.3%에 달함.

1) 부록 표 참조

3.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 제도의 문제점

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에 해당됨.

- 배우자도 없고 20세 미만의 부양가족도 없고 단지 상속인 아들 1명을 둔 피상속인은 유효세율이 최고 62.6%에 달할 수 있음.
- 피상속인 갑의 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100억 원을 벌었는데, 2015년 1월 31일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함.²⁾
- 유산 100억 원은 은행예금이며, 사망 전 증여액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인은 2015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7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함.

상속재산의 이중과세 사례

	항목	내역	금액
종합소득세	소득과세 대상 금액	100억 원 - 기본공제(150만 원)	99억 8천 5백만 원
	종합소득세	3,760만 원 + (99억 8천 5백만 원 - 1억 5천만 원)×0.38	37억 7천 4백 9십만 원
	지방소득세	37억 7천 4백 9십만 원×0.1	3억 7천 7백 49만 원
	총소득세		41억 5천 2백 39만 원
	실효세율	41억 5천 2백 39만 원/100억 원×100	41.52%
상속세	상속세 대상 유산금액	100억 - 41억 5천 2백 39만 원	58억 4천 7백 61만 원
	공제대상금액	장례비(1,500만 원) + 일괄공제(5억 원) + 금융재산공제(2억 원)	7억 1천 5백만 원
	상속세과세표준	58억 4천 7백 61만 원 - 7억 1천 5백만 원	51억 3천 2백 61만 원
	상속세액	10억 4천만 원+(51억 3천 2백 61만 원-30억 원)×0.5	21억 6백 30만 5천 원
	실효세율	21억 6백 30만 5천 원/100억 원×100	21.63%
합계	총세부담액	41억 5천 2백 39만 원+21억 6백 30만 5천 원	62억 5천 8백 69만 5천 원
	실효세율	62억 5천 8백 69만 5천 원/100억 원×100	62.59%

2) 월천납부세액도 증가예납세액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소득 100억 원은 세무조정이 완료된 금액으로 가정함.

나) 완전포괄주의 문제점

- ▶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과세권자에 대한 무한한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과세기관의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과세권자의 유추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금지하여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과세권력의 남용을 자초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높은 납세순응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함.
 -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는 경제잉여에 대해 앞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을 미리 예측하면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세법이 모호하고 그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 ▶ 완전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 전환
 - 과세권자의 유추해석과 재량권을 줄여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높음.

다)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 ▶ 대부분의 나라가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산을 무상취득하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함.
 - 유산과세형은 회피조세정산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여 생전에 피상속인이 회피하였던 소득세 부담을 사망 후 정산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유증분 등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몫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 유산과세형은 유산을 많이 승계취득하는 상속인이나 적게 취득하는 상속인이나 동일한 초과누진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됨.

- 유산과세형을 채택할 경우 상속과세를 지지하는 이론의 전제는 부 분산을 통해 삶의 출발점을 평등하게 하자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빈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모순에 직면
- 인적공제 항목은 사회 정책적 고려에 의해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미성년자, 장애인, 배우자공제 등)의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인데, 유산과세형은 이와 같은 공제제도의 취지에 위배

▶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필요

- 응능부담 원칙에 충실하면서 부의 분산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겠다는 상속세제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음.

라) 폐지가 필요한 상속세법 조항

(1)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세

▶ 문제점

- (상증세법 제19조)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부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어 상속과 재산분할간의 불공평 문제와 위장위혼 등의 불법문제를 야기

▶ 개선방향

- 영국과 미국과 같이 1세대 1회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배우자간 이전에 대한 세부담을 면제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면 위장 이혼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탈법을 방지할 수 있음.
- 현행법상의 배우자간 무상이전에 상속과세의 원칙을 고수하려면 최명근(2002)의 제안과 같이 배우자상속공제를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 공제액을 초과하여 이혼할 경우 분할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2) 사망 전 재산처분금액 등의 상속재산 합산 제도

▶ 문제점

- (상증세법 제15조) 재산 종류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과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상속세를 부과
-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 상속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과세포착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
- 피상속인이 살아있더라도 입증하기 어려운 사항을 상속인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개선방향

- 폐지하거나 입증책임을 관세관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
- 현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과세기관이 상속인과 피상속인,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금융거래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관세청이 재산처분금액이나 부담 채무액이 다른 재산의 형태로 변칙 상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3) 폐지가 필요한 기타 상증세법조항

▶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 문제점

- (상증세법 제35조) 타인과의 거래에서 저가양수·고가양도를 증여로 취급
-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되며,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경제거래상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개선방향

-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시가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해야 함.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 문제점

- (상증세법 제41조의3)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이 주식을 5년 안에 상장하게 되면서 주가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에 증여세를 추가 과세
- 당초의 비상장주식의 직접 증여행위와 다른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상장을 5년간 연속된 하나의 증여행위라고 보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 개선방향

- 주식상장차익은 미실현 자본이득임에도 이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논리상의 맞지 않아 자본이득세(주식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 함.

▶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 문제점

- (상증세법 제42조제3항) 미성년자,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유상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사유로 인해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로 취급
- 개발행위를 증여행위의 연속으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고, 수증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증여세와 자본이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함.

- 개선방안

- 당초 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양도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전환 필요

▶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 문제점

- (상증세법 제37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받는 무상사용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취급
- 부동산 소유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에는 소득세 과세)을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이에는 증여세 과세)하게 되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동 조항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여 매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III.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개요

가) 상속세제 개편안

▶ 본 장에서는 상속세제 개편을 크게 3개로 나누고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하여 개편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하는 경우 미국식 개편안과 독일식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며, 폐지하는 경우는 캐나다식 개편안을 고려하였음.
- 개편안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50억 원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시 100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를 임의로 산정하였으며, 상속인은 자녀 1명과 배우자 1명으로 가정하였음.
- 현행 상속세제를 적용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40.4%에 달함.
- (개편 1안) 미국식 개편안으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안임.
 - 증여합산연수를 고려하여 현행 공제 금액의 2배인 20억 원을 공제한도로 가정하였음.
 - 미국과 같이 소득세와 동일한 상속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30.2%로 기준안에 비해 25.2%낮음.
- (개편 2안) 독일식 개편안으로 공제금액 한도를 독일과 같이 17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안임.
 - 최고세율을 30%로 할 경우 현행 종합소득세의 4단계의 누진구조를 적용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26.2%로 현행 대비 35%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편 3안)은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과세로 전환하는 캐나다 방식과 동일함.
 - 개편 1안과 개편 2안의 과세대상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원인 반면 개편 3안에서는 자산가격 상승분 50억 원이 과세대상이 됨.
 -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효세율은 22%로 현행대비 45.6%감소
 - 캐나다와 같이 산입률 50%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11%로 현행대비 72.8%감소함.

상속세제 개편안

(단위: 백만 원)

과세대상	기준안 (현행)		개편 1안		개편 2안		개편 3안	
			미국 Type		독일 Type		캐나다 Type	
과세대상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 공제(5억 원)	1,000.00	현행공제 대비 2배	2,000.00	현행공제 대비 1.7배	1,215.50	250만 원	2.50
과세표준	9,000.00			8,000.00		8,784.50		4,997.50
납부세액	현행 5단계 상속세 누진세율 ¹⁾	4,040.00	현행 5단계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세율 38%) ²⁾	3,020.60	4단계 누진소득세율 (최고세율 30%) ³⁾	2,624.85	양도세율 20% + 지방세분 2%	1,099.45
실효세율 ⁴⁾ (%)	40.4			30.2		26.2		22.0 (11.0)
현행 대비 감소율 ⁵⁾ (%)	-			25.2		35.0		45.6 (72.8)

주: 1) 10억 4천만 원+(51억 2천 6백 9십 6만 7천 원-30억 원)×0.5

2) 현행 5단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으로 전환: 3,760만 원 + (44억 1천 1백 9십 6만 7천 원-1억 5천만 원)×0.38

3) 현행 4단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으로 전환: 1,200만 원 이하 6%, 4,600만원 15%, 8,800만 원 24%, 8,800만 원 30% = 1,590만 원+(87억 8천 4백 5십만 원-8천 8백만 원)×0.30

4)와 5) ()의 숫자는 캐나다와 같이 산입률 50%를 적용할 경우의 실효세율과 현행대비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음..

나) 분석모형

- ▶ 조경엽(2007)의 세대중복형 모형을 분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상속세제 개편안 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특정 기에 존재하는 i 세대는 21세부터 80세까지 5년 단위로 j 기간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5년을 주기로 2013년부터 2164년까지로 한정하였음.

2. 분석결과

가) 생애 소득, 노동, 소득변화

- ▶ 개편 1안에 따른 생애 변화

- 상속은 5.7% 증가하고, 소비는 생애 평균 0.23% 증가하며, 노동시간은 0.1%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됨

- 생애기간 축적된 자산(저축)은 소비 또는 상속으로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생애 평균은 영(0)으로 추정됨.
- 연령별로 소비는 35세까지 감소하다가 45세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동의 경우는 상속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유인이 감소하여 40세까지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다가 45세 이후에는 상속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유인이 발생
- 저축은 30세까지 증가하지만 음의 저축이 줄어드는 정도이며, 30세 이후 감소하다가 마지막 기에 상속과 소비로 모두 지출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의 저축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편 2안에 따른 생애 변화

- 상속은 6.93% 증가하고 소비는 생애 평균 0.35% 증가하며, 노동은 0.12%, 증가할 전망이다
- 연령별 변화는 개편안 1안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는 기간에는 노동이 감소하지만 중장년에 들어서면 노동과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애 패턴이 변할 전망

▶ 개편 3안에 따른 생애 변화

- 상속은 7.6% 증가하고, 소비는 0.46% 증가하고, 노동은 0.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령별 변화는 개편안 1안과 2안과 유사한 패턴으로 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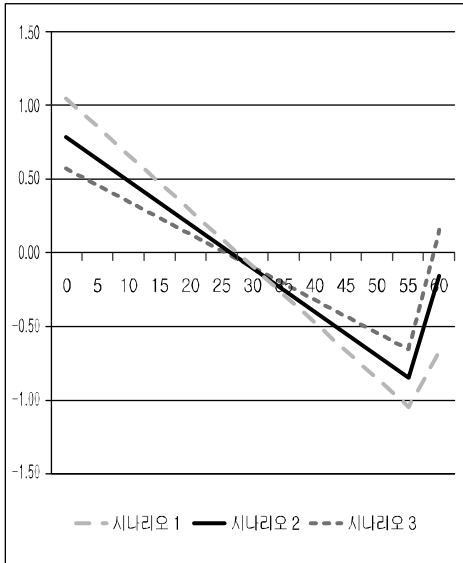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생애 변화

(단위: %)

	상속			피상속			소비			노동시간			저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0	5.54	6.69	7.29				-0.38	-0.55	-0.76	-0.53	-0.77	-1.05			
5	5.54	6.69	7.29				-0.33	-0.48	-0.66	-0.31	-0.46	-0.63	1.47	2.35	3.47
10	5.54	6.69	7.29				-0.20	-0.29	-0.40	-0.24	-0.35	-0.48	0.03	0.01	-0.03
15	5.54	6.69	7.29				-0.08	-0.11	-0.16	-0.16	-0.24	-0.33	-1.02	-1.51	-2.09
20	5.54	6.69	7.29				0.04	0.05	0.07	-0.08	-0.13	-0.18	-1.65	-2.53	-3.60
25	5.54	6.69	7.29				0.14	0.21	0.27	0.00	-0.01	-0.02	-3.79	-5.73	-8.05
30	5.54	6.69	7.29				0.24	0.35	0.47	0.08	0.11	0.15	-3.64	-5.39	-7.44
35	5.54	6.69	7.29				0.34	0.49	0.66	0.16	0.24	0.32	7.58	11.23	15.50
40	5.54	6.69	7.29				0.43	0.62	0.85	0.25	0.36	0.49	3.83	5.59	7.62
45							0.52	0.75	1.03	0.34	0.49	0.66	2.85	4.10	5.51
50							0.61	0.88	1.20	0.42	0.62	0.84	2.30	3.32	4.48
55							0.69	1.01	1.38	0.51	0.75	1.02	1.99	2.88	3.89
60				5.7	6.9	7.6	0.31	0.50	0.72	0.13	0.24	0.37	-10.30	-15.02	-20.44
합계	5.54	6.69	7.29	5.70	6.93	7.62	0.23	0.35	0.46	0.10	0.12	0.18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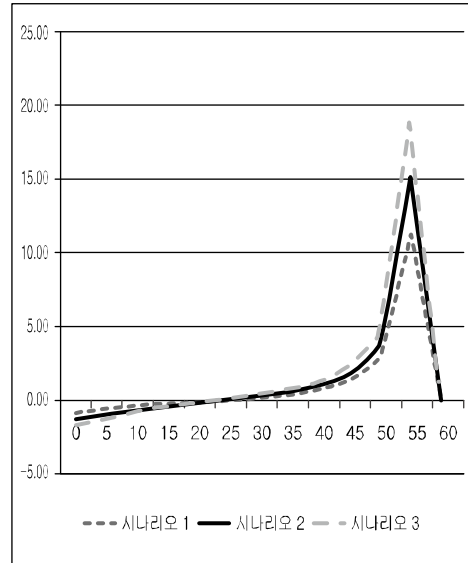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생애 소비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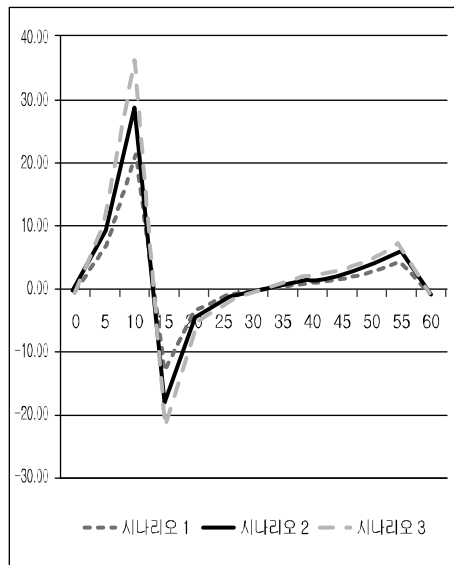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생애 노동시간 변화

(단위: %)



시나리오별 생애 저축변화

(단위: %)



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상속세 개편은 고용, 경상수지, 내수, 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상속세 개편은 저축을 늘리고 자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고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표(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국민경제 변화)에서 보듯이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59,687개 ~ 110,711개에 달하고, GDP 증가효과는 0.14% ~ 0.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모형에 노동시간과 노동자 수가 분리되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노동시간 증가가 기존의 노동인력이 근무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인지 고용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속세 개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일인당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2013년 상용 근로자 1천 2백 3십만 명에 개편안별 노동시간 변화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약 59,687개 ~ 110,711개에 달함
 -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은 노동시간 증가보다 작은 0.1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상속이 증가하면 대내적으로는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의 유출이 줄어들고 유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저량(stock)이 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자본소득은 0.15% ~ 0.3%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1.24% ~ 2.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동소득, 자본소득, 상속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데, 개편안에 따른 소비증가는 0.17% ~ 0.3%에 달할 전망이다
 - 상속세 개편으로 소비, 투자, 수출입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GDP 증가는 0.14% ~ 0.28% 증가할 전망이다
 -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근로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세수 감소는 연간 7천억 원 ~ 1조 3천 8백억 원에 그치고 있어 GDP 증가를 고려하면 큰 폭의 감소가 아닌 것으로 평가됨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국민경제 변화(연평균)

		개편 1안 (미국식)	개편 2안 (독일식)	개편 3안 (캐나다식)
노동	노동시간 (%)	0.48	0.68	0.90
	일자리 (개)	59,687	84,176	110,711
	노동소득 (%)	0.11	0.16	0.22
지분소득 (%)		0.15	0.22	0.30
경상수지 (%)		1.24	1.81	2.46
소비 (%)		0.17	0.25	0.35
GDP (%)		0.14	0.20	0.28
세수입	상속세 (%)	-21.0	-30.7	-41.6
	기타세수입 (%)	0.11	0.15	0.21
	총세수입 (%)	-0.35	-0.51	-0.70
	총세수입(10억원)	-697	-1,017	-1,380

주: 일자리는 2013년 상용 근로자 12,324,186명에 노동시간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정

IV. 결론

▶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부가 축적되었을 거라는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작용한 결과임.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계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조항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최고 수준이며, GDP대비 상속세부담은 OECD국가 중에서 4위,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조항을 도입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상속과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이 커지고 있음.

▶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3개국뿐이며, 공제금

액도 낮아 상속세의 실효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의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12%p를 기록
 - 이는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강조되고 비정상적으로 부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피상속인이 회피한 소득세를 정산한다는 관점에 치중된 결과임.
- 공제금액은 독일 12억 원, 일본 23억 원, 미국 55억 원에 비해 낮아 실효세율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행 상속세를 유지한다면 불합리한 상속세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낮게 유지하는 미국식과 독일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시킴으로써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증여공제와 상속공제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증여를 통한 취업난 해소와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음.
 - 독일과 같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고 건강한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함.
-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거나 독일과 같이 상속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해야 함.
- 불합리한 상속·증여제도의 개선과 폐지는 시급한 과제임.
 -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가능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경제활동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 전환 필요
 - 응능부담원칙과 부의 분산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겠다는 상속세 취지에 위배되는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이 필요함.
 -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세 폐지, 사망전 재산처분 금액 등의 상속재산 합산제도에 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서 과세관청으로 전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폐지,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폐지, 증여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폐지,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폐지가 요구됨.

▶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필요**

- 그동안 상속과세 폐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인프라의 미비 문제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면서 해결되고 있어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캐나다와 같이 상속을 양도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익에 과세하는 자

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야기되는 납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자본이득과세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국식-독일식-캐나다식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를 정착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상속세 개편은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고용은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 개에서 1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됨
- GDP는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천억 원에서 1조 3천 8백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GDP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I. 서론

▶ 상속·증여과세 제도만큼 철학에서부터 법 이론적 적합성, 경제학적 실용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를 찾기 힘들.

- 찬성론자들은 상속권을 국가가 부여한 제도로 인식하고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균등을 위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상속권은 국가가 인정한 실정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이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찬성론자들은 상속은 특정집단에게 부를 집중시켜 인생의 출발점을 불평등하게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상속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상속세는 삶의 우등생을 역차별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진시키고 저축과 투자를 위축시켜 하향평준화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개인의 소유권과 상속권은 자연법적인 인간의 권리이지 국가가 시인·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
- 상속세는 낭비하고 소비를 즐겼던 사망자에게는 면세하고 자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제도라 주장
- 상속세가 과도하면 세 부담이 적거나 없는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정부의 해외유출로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
- 상속세는 저축,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하향평준화를 초래함.

▶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의 이전에 차별을 없애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에 기대어 상속과세를 강화하여왔음.

-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

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1970년대 이후 상속과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의 축적이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지고의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이 확산되어 왔음.

- 최근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을 부의 대물림 때문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와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음.

▪ ‘금 수저와 흙 수저’, ‘헬 조선’ 등의 용어가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는 비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음.

- 상속은 주로 부유한 계층에서 가난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소득재분배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세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제수준도 낮아 상속세제를 유지하는 타 국가들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상황임.

▪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호주 등은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제가 복잡성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할 경우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식 개편과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식 개편을 고려하고 있음.

▪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캐나다와 같이 상속을 하는 시점을 자본의 양도로 간주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개편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이 밖에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불합리한 상증세법 조항들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상속세를 미국식, 독일식, 캐나다식으로 개편했을 때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세대중복형(OLG)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세대별 대표 소비자의 생애 소비, 노동 및 자산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GDP, 소비, 투자, 정부세수입 변화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고 있음.



II. 상속·증여과세 현황과 문제점

1.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문제점

가) 상속·증여세율

- ▶ 상속세의 과표구간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세율은 50%에 달함.
 -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주식은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세율은 65%에 달함.
 -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이하인 경우 평가액에 20%를 더하여 평가하고 있음.³⁾

[표 1] 상속·증여세율

1997~1999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이하	1천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이하	9천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30%)
5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0%)
50억 원 초과	50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30억 원 초과금액의 50%)

▶ 상속·증여세율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국가의 평균 26%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임.
- 상속과세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국부유출을 막고 성장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음.
 - 캐나다가 1972년에 폐지하였으며, 호주 1979년, 이스라엘 1981년, 멕시코와 스웨덴

3) 상증세법 제63조제3항.

2005년, 오스트리아 2008년, 체코 2014년에 폐지하였으며, 중국은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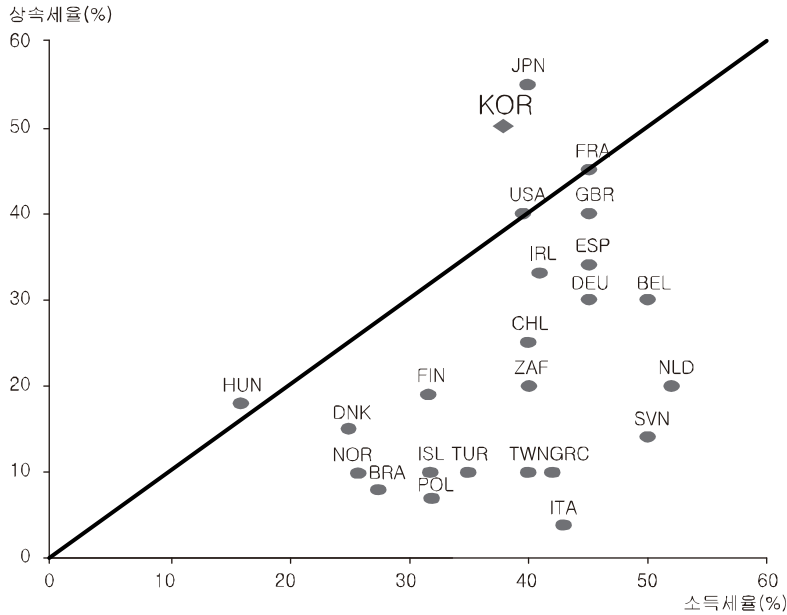
-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국가들은 21개국에 달함.
 - 상속세율을 10%이하로 소득세율보다 낮게 부과하는 국가에는 OECD국가인 그리스, 터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7개국이 이에 속하고 있으며, 비OECD국가로는 브라질과 대만이 있음.
 - 상속세율이 10%를 초과하지만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등 11개 OECD국가와 1개의 비OECD국가를 포함하여 총 12개 국가가 있음.
- 프랑스와 미국은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음.
-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3개국뿐임.

[표 2]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국제비교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 폐지 (또는 미시행)
일본(55%)40%) 한국(50%)38%) 헝가리(18%)16%)	프랑스(45%) 미국(40%)≒39.6%)	상속세율 10% 초과 영국(40%<45%) 네덜란드(20%<52%) 스페인(34%<45%) 독일(30%<45%) 벨기에(30%<50%) 아일랜드(33%<41%) 칠레(25%<40%) 핀란드(19%<31.75%) 덴마크(15%<25%) 슬로베니아(14%<50%) 남아프리카(20%<40%)	캐나다('72) 호주('79) 이스라엘('81) 뉴질랜드('92) 포르투갈('04) 슬로바키아('04) 멕시코('05) 스웨덴('05) 오스트리아('08)
		상속세율 10% 이하 그리스(10%<42%) 터키(10%<35%) 아이슬랜드(10%<31.8%) 노르웨이(10%<25.75%) 폴란드(7%<32%) 이탈리아(4%<43%) 스위스(칸톤별<13.2%) 브라질(8%<27.5%) 대만(10%<40%)	체코('14) 에스토니아(미시행) 인도('85) 러시아('06) 싱가포르('08) 중국(미시행)

자료: 김재준(2014)에서 재인용

[그림 1] 국가별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분포도



▶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의 문제점

-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목적 하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격차도 12%p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음.

나) 공제제도

▶ 우리나라의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로 운용하고 있음.

- 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공제,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가 있음.
-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에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를 더한 공제 중에서 더 큰 공제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일괄공제를 선택할 경우 일괄공제에 배우자공제를 더하여 인적공제금액이 결정됨.
- 물적공제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음.

[표 3] 우리나라의 상속공제제도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원, 30억 원 한도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 원	-
	장애자공제	1천만 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
물적공제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 재산의 100%	최대 500억 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5억 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20%	2억 원
	재해손실공제	당해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80%	5억 원

▶ 증여공제는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10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함.

- 증여재산공제는 인적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며, 창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5억 원 공제 후 30억 원 한도로 10%를 작용하고 있음.

[표 4]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제도

구분	항목	공제내용	비고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6억 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존속공제	5천만 원	
	기타친족공제	1천만 원	
	재해손실공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기타	창업자금증여	5억 원 공제 후 30억 원 한도로 10% 특례세율 적용	상속 시 정산
	가업상속증여		

▶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중소·중견기업)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 원 한도)를 공제하고 있음.
- 공제한도는 상업 경영 연수에 따라 차별 적용되며 20년 이상 경영을 계속한 경우 500억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율 10%(30억 원 한도)를 적용한 후 상

속시 정산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며 2년 이내에 임원으로 취해야 함.
- 사후관리 요건으로는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할 수 없으며 주식을 받은 경우 100% 지분을 유지해야 함.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함.

[표 5] 가업상속공제제도

구분	구체적 요건
가업상속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공제한도	▶ 공제율: 가업상속재산 100% ▶ 공제한도: 가업경영기간별 - 10년 이상 계속 경영 200억 원 - 15년 이상 계속 경영 300억 원 - 20년 이상 계속 경영 500억 원
피상속요건	▶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 대표자 재직기간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 상속직전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 상속일까지 계속하여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한함 ▶ 10년 이상 계속 최대주주 지분을 50% 이상 보유(상장주식은 30% 이상) ※ 특수관계인 포함
상속인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인 1인 ▶ 상속인 등(상속인 또는 배우자) 2년 이상 가업종사, 상속세 신고 5개월 내 임원취임, 2년 내 대표자 취임 ▶ 상속인 1인 전부상속 ※유류분상속재산 공제 제외
사후관리	(10년간) ▶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5년간 90% 이상 유지) ▶ 상속인 등(상속인 또는 배우자) 가업종사(대표이사) 유지 ※ 세분류 내 업종, 1년 미만 휴업 가능 ▶ 상속지분 100% 유지 ※ 합병, 분할, 유상증자, 기업공개요건 충족 등에 따른 지분 감소시 예외 ▶ 매년 상속직전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80% 유지 ▶ 10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100% 유지 ※ 중소기업 외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은 120% 유지

▶ 공제수준의 국제비교

- 배우자와 1자녀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점은 약 10억 원으로 영국 5.6

억 원보다 높으나 미국 55억 원, 독일 17억 원, 일본 23억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⁴⁾

- 합산 연도가 상이하여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배우자와 1자녀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여공제는 최대 6.5억 원이며, 미국은 55억 원, 독일 12억 원, 일본 1,10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6] 주요국의 상속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구분	국가	면세점	1인당 GDP 배수	주요 공제
상속공제	한국	10억₩	39.3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최소 5억₩)
	미국	5,340,000\$ (55억₩)	101.5	통합한도(증여 포함, 5,340,000\$) 배우자공제(한도 없음)
	영국	325,000 (5.6억₩)	13.2	325,000까지는 0% 배우자공제(전액) 매년 3,000 증여액은 상속시 미포함
	독일	1,207,000 € (17억₩)	36.5	배우자공제(755,000 €) 자녀공제(452,000 €)
	일본	2.3억¥ (23억₩)	56.6	기초공제(최소 5천만¥) 상속인당 1천만¥ 배우자공제(최소 1.6억¥)

자료: 김재준(2014)에서 재인용

[표 7] 주요국의 증여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구분	국가	면세점	1인당 GDP 배수	주요 공제
증여공제	한국 (10년 합산)	6.5억₩	26.5	배우자공제(6억₩) 자녀공제(1인당 5천만₩)
	미국 (평생 합산)	5,340,000\$ (55억₩)	101.5	통합한도(증여 포함, 5,340,000\$) 배우자공제(한도 없음) 기초공제(수증인 1인당 13,000\$)
	독일 (10년 합산)	900,000 € (12억₩)	36.5	배우자공제(500,000 €) 자녀공제(400,000 €)
	일본 (1년 합산)	110만¥ (1,100만₩)	0.3	기초공제(110만¥)

자료: 김재준(2014)에서 재인용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등 주요국은 가업상속의 공제금액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음.

4) 김재준(2014)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통합한도는 평생합산체제로 증여공제와 통산하므로 단순비교가 어려움

[표 8] 주요국의 기업상속공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공제금액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 10년: 100억 원 • 15년: 300억 원 • 20년: 500억 원 한도: 500억 원	기업상속재산 공제의 합산 공제액은 기업상속재산 기본공제액 \$625,000과 기업상속 공제 최고 한도 \$675,000을 합산 한도: \$1,300,000	한도 없음	비상장주식: 주식과세가액의 80% 납세유예 한도: 발행주식의 2/3	100% 공제 • 지배기업의 유가증권 • 경영권이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 50% 공제 · 상장회사 주식 • 사업용 토지 · 건물, 기계,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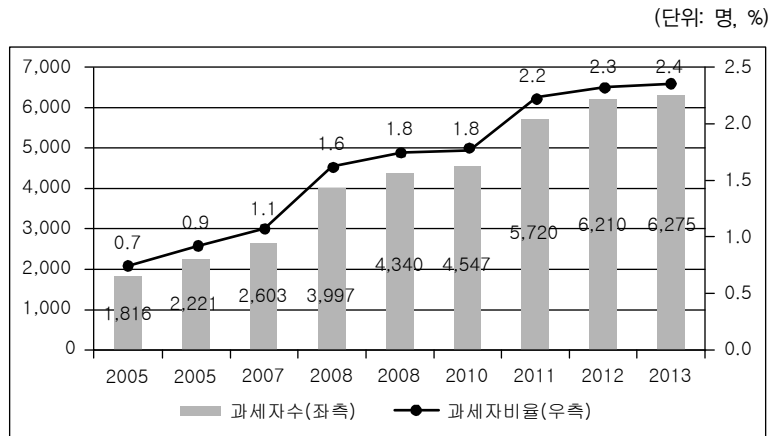
주: 정승영(2013)과 김재준(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공제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제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고 세율은 높아 이중과세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상황임.
- 주요 국가에서 공제제도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한 것임.
- 반면 우리나라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소득세를 회피했을 거라고 전제하고 미납부한 소득세를 상속과정에서 이를 정산한다는 인식이 강함.
- 이는 선량한 국민을 불법·탈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음.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5천만 원)가 상속의 일괄공제 5억 원에 비해 매우 낮아 사전증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증여공제를 확대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 높음.
- 증여가 10년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를 반복하여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같이 평생합산으로 전환하고 증여공제금액을 대폭 증액하여 조세회피로를 차단하고 증여와 상속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인적공제제도를 다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낮아 인적공제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제금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⁵⁾

- [그림 2]에서 보듯이 상속세과세자 비율은 2005년에 0.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2.4%에 달함.

[그림 2] 상속세 과세자수와 과세비율



주: 과세비율은 당해 사망자수 대비 상속 과세자수 비율을 의미. 세표상 결정현황 기준임

-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가업상속 공제에 한도를 두지 않는 이유는 가업상속을 통해 건강한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기여토록하기 위함임.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공제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상속·증여세수 현황과 문제점

가) 상속세부담의 국제비교

- ▶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부담 수준이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GDP대비 상속세수입 비중은 0.29%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 모든 나라에서 GDP대비 또는 총세수입 대비 상속증여 세수입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5) 상속세과세 대상자가 2000년에 4,340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 6,265명에 달하고 있음.

- OECD국가 중 벨기에, 프랑스, 일본만이 3개국 GDP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0.3%를 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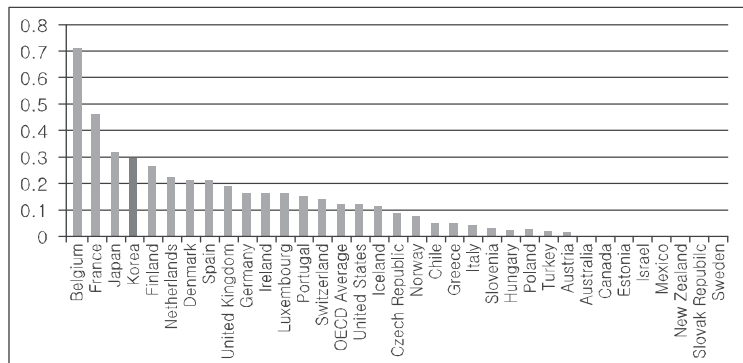
- 총세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1%를 넘는 나라는 벨기에, 한국, 일본, 프랑스 4개국에 그치고 있음.

▶ 상속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은 세수입을 얻기 위해 국부유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 상속과세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결손은 경제규모가 발전적으로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입으로 충분이 메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림 3] GDP대비 상속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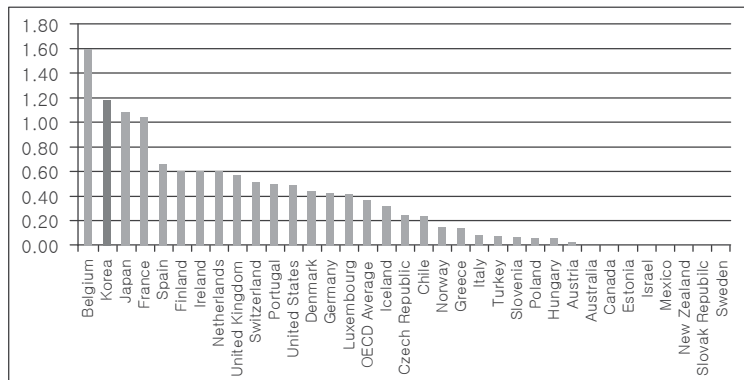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그림 4] 총세수입 대비 상속세수입

(단위: %)



자료: OECD

[표 9] Revenue for Transfer Taxes

Country	Percent of GDP	Percent of Revenue
OECD Average	0.12	0.36
Australia	0.00	0.00
Austria	0.01	0.02
Belgium	0.71	1.61
Canada	0.00	0.00
Chile	0.05	0.24
Czech Republic	0.08	0.25
Denmark	0.21	0.44
Estonia	0.00	0.00
Finland	0.26	0.60
France	0.46	1.04
Germany	0.16	0.43
Greece	0.05	0.14
Hungary	0.02	0.05
Iceland	0.11	0.31
Ireland	0.16	0.60
Israel	0.00	0.00
Italy	0.04	0.09
Japan	0.32	1.08
Korea	0.29	1.18
Luxembourg	0.16	0.42
Mexico	0.00	0.00
Netherlands	0.22	0.59
New Zealand	0.00	0.00
Norway	0.07	0.15
Poland	0.02	0.06
Portugal	0.15	0.49
Slovak Republic	0.00	0.00
Slovenia	0.03	0.07
Spain	0.21	0.66
Sweden	0.00	0.00
Switzerland	0.14	0.52
Turkey	0.02	0.08
United Kingdom	0.19	0.57
United States	0.12	0.48

자료: OECD

나) 상속·증여세의 결정 현황 및 유효세율

- ▶ 2013년 과세대상 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억 원 이상인 피상속인 비중은 10.4%에 달함.⁶⁾

- 규모별로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20억 원인 피상속인 수가 1,843명으로 총 피상속인 중 2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1억 원~3억 원인 피상속인이 1,261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음.

-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의 비중은 4.7%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500억 원을 넘는 피상속인 비중은 0.1%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추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계층의 세부담은 76.1%에 달하고, 10억 원 이하의 계층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3.9%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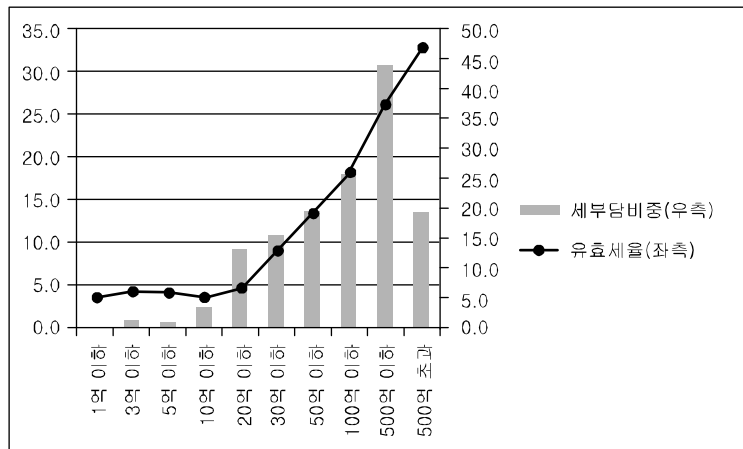
- 규모별로는 100억 원~500억 원의 계층이 31%를 부담하고 있으며 5억 원 이하의 계층의 세부담은 1%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 산출세액 기준으로 추정한 유효세율은 최저 5.2%에서 최고 47.3%에 달해 강한 누진적인 세부담구조를 보여주고 있음.⁷⁾

- 상속가액이 20억 원 이하에서는 중립적인 세부담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20억 원 이상부터 누진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5] 상속세 부담 비중과 유효세율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6) 부록 표 참조

7)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존기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 유효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증여세 대상 인원 109,644명중 85% 이상이 증여재산가액 3억 원 이하에 속하고 있으며, 30억 원 이상은 1.3%에 그치고 있음.

- 증여재산 규모별로는 1천만 원~5천만 원이 29.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천만 원~1억 원 19%로 많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0.2%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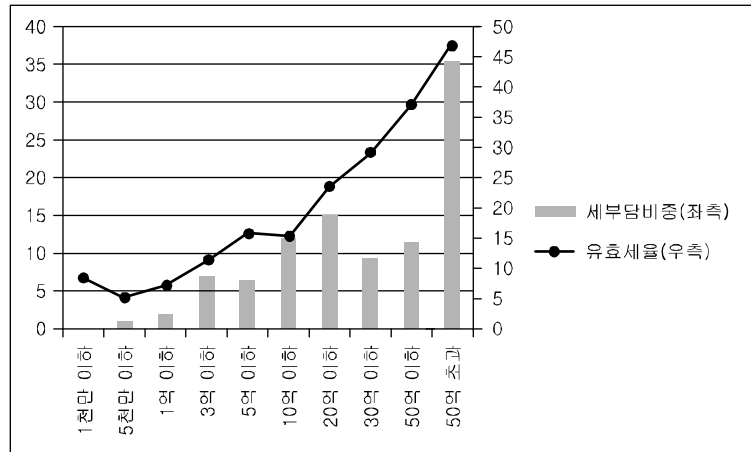
▶ 재차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추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계층의 세부담은 35.6%에 달하고, 1억 원 이하의 계층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 산출세액 기준으로 추정한 유효세율은 최저 5.6%에서 최고 47.3%에 달해 누진도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음.⁸⁾

- 상속가액이 1억 원 이하의 유효세율은 7.3%에 달하다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50억 원 초과 시 유효세율은 47.3%에 달함.

[그림 6] 증여세 부담비중과 유효세율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존기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 유효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3.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 제도의 문제점

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에 해당됨.

- 소득세를 납부하고 축적한 자산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임.
- 배우자도 없고 20세 미만의 부양가족도 없고 단지 상속인 아들 1명을 둔 피상속인은 [표 10]에서 보듯이 유효세율이 최고 62.6%에 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갑의 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100억 원을 벌었는데, 2015년 1월 31일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함.⁹⁾
- 유산 100억 원은 은행예금이며, 사망 전 증여액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인은 2015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7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함.

[표 10] 상속재산의 이중과세 사례

	항목	내역	금액
종합소득세	소득과세 대상 금액	100억 원 - 기본공제(150만 원)	99억 8천 5백만 원
	종합소득세	3,760만 원 + (99억 8천 5백만 원 - 1억 5천만 원)×0.38	37억 7천 4백 9십만 원
	지방소득세	37억 7천 4백 9십만 원×0.1	3억 7천 7백 49만 원
	총소득세		41억 5천 2백 39만 원
	실효세율	41억 5천 2백 39만 원/100억 원×100	41.52%
상속세	상속세 대상 유산금액	100억 - 41억 5천 2백 39만 원	58억 4천 7백 61만 원
	공제대상금액	장례비(1,500만 원) + 일괄공제(5억 원) + 금융재산공제(2억 원)	7억 1천 5백만 원
	상속세과세표준	58억 4천 7백 61만 원 - 7억 1천 5백만 원	51억 3천 2백 61만 원
	상속세액	10억 4천만 원+(51억 3천 2백 61만 원-30억 원)×0.5	21억 6백 30만 5천 원
	실효세율	21억 6백 30만 5천 원/100억 원×100	21.63%
합계	총세부담액	41억 5천 2백 39만 원+21억 6백 30만 5천 원	62억 5천 8백 69만 5천 원
	실효세율	62억 5천 8백 69만 5천 원/100억 원×100	62.59%

9) 원천납부세액도 증가예납세액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소득 100억 원은 세무조정이 완료된 금액으로 가정함.

나) 완전포괄주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과세권자에 대한 무한한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과세기관의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포괄주의란 열거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세법에 세금의 부과대상을 명백하게 미리 규정하지 않고, 소득의 종류 및 원천 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과세권자의 유추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금지하여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과세권력의 남용을 자초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높은 납세순응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함.

▶ 과세기관의 재량권이 커질수록 국민의 법적 안전성과 경제활동상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됨.

- 포괄주의의 도입으로 행정부가 국회가 제정하지 않은 하위법규에 의해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신축시킴으로서 국민의 법적 안전성이 침해됨.

-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는 경제잉여에 대해 앞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을 미리 예측하면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세법이 모호하고 그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 개선방향

- 완전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 전환하여 과세권자의 유추해석과 재량권을 줄여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함.

다)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 대부분의 나라가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⁰⁾

- 유산과세형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

10) 일본은 제2차대전 후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었고, 유산과세형을 운용하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였으며, 미국만이 유산과세형을 고수하고 있음.

전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

- 유산을 무상취득하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함.
- 유산과세형은 회피조세정산론(back tax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여 생전에 피상속인이 회피하였던 소득세 부담을 사망 후 정산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¹¹⁾
-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의 취득재산가액을 세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유증분 등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이와 같이 분할·계산된 각자의 몫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 유산과세형은 응능부담의 원리에 위배됨.
- 유산을 많이 승계취득하는 상속인이나 유산을 적게 승계취득하는 상속인이나 동일한 초과누진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모순에 직면하게 됨.
- 유산과세형은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 미흡
- 유산과세형을 채택할 경우 상속과세를 지지하는 이론의 전제는 부 분산을 통해 삶의 출발점을 평등하게 하자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빈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모순에 직면
- 유산과세형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된 공제제도의 취지에 위배
- 인적공제 항목은 사회 정책적 고려에 의해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미성년자, 장애인, 배우자공제 등)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임.
- 그러나 유산과세형을 채택하면 특수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부담경감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제대상인 상속인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게 돌아가는 모순을 유발함.

▶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필요

- 응능부담 원칙에 충실하면서 부의 분산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겠다는 상속세제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음.

11) 그러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논리적 모순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게 됨. 정승영(2013) 참조

라) 폐지가 필요한 상속세법 조항

(1)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세(상증세법 제19조)

- ▶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부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어 상속과 재산분할간의 불공평 문제와 위장위혼 등의 불법문제를 야기

- 재산분할이라는 개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낸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또한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음.
-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재산으로 받았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하게 됨.

- ▶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영국과 미국과 같이 1세대 1회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상속세에서 배우자 간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면제하거나 배우자공제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우자간 증여는 이를 잠재적 고유지분의 청산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도 역시 지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배우자간 이전에 대한 세부담을 면제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면 위장 이혼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탈법을 방지할 수 있음.

- ▶ 최명근(2002)는 현행법상의 배우자간 무상이전에 상속과세의 원칙을 고수하려면 배우자상속공제제도를 합리화하고 이를 재산분할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배우자상속공제를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 공제액을 초과하여 이혼할 경우 분할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또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조세포탈이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¹²⁾

(2) 사망 전 재산처분금액 등의 상속재산 합산 제도(상증세법 제15조)

- ▶ 재산 종류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과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상속세를 부과
- ▶ 폐지하거나 입증책임을 관세관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
 - 피상속인이 살아있더라도 입증하기 어려운 사항을 상속인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므로 폐지가 최선임.
 - 원래 이 법조를 설정한 것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 상속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과세포착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
 - 또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과세기관이 상속인과 피상속인,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금융거래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 세무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강력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관세청이 재산처분금액이나 부담 채무액이 다른 재산의 형태로 변칙 상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3) 폐지가 필요한 기타 상증세법조항

▶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세법 제35조)

- 타인과의 거래에서 저가양수·고가양도를 증여로 취급
 - 그 시가차액이 30% 이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차액이 1억 원인 경우에만 그 차액을 증여로 과세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그 과세대상은 부동산이거나 주식 등 유가증권
-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며,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경제거래상의 의사결

12) 혼인의 취소 또는 재산의 분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지 아니하나, 그 재산의 분여액이 결혼 중 부부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가액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도 역시 과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당한 부분 또는 이혼을 수단으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 포탈을 기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이혼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으로 취급하는 것.

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시가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자본이득과 세로 대체해야 함.

- 저가양수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자본이득이 시가차액만큼 감소했지만 장차 양수자의 자본이득은 그 시가차액만큼 증가하게 되고, 고가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자본이득이 시가차액만큼 증가했고 양수인의 자본이득은 장차 그 시가차액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서 발생하는 시가차액을 증여로 취급할 이유가 없음.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세법 제41조의3)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상장하게 되면서 상승할 경우 증여행위와 주식상장행위까지를 연속된 증여행위로 보고 시세차익에 증여세를 추가 과세

- 문제점

-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자본시장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어렵게 함.
- 당초의 비상장주식의 직접 증여행위와 다른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상장을 5년간 연속된 하나의 증여행위라고 보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 개선방향

- 현행제도에서 주식상장차익은 그 본질이 미실현 자본이득임에도 이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세논리상의 맞지 않아 상장시세차익을 증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본이득세(주식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 함.

▶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상증세법 제42조의3)

- 미성년자,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유상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사유로 인해 증가된 재산 가치를 증여로 취급

- 문제점

- 개발행위를 증여행위의 연속으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고, 수증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증여세와 자본이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함.

- 개선방안

- 당초 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양도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전환필요

▶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세법 제37조)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받는 무상사용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취급

- 문제점

-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냐가 문제
- 부동산 소유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에는 소득세 과세)을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이에는 증여세 과세)하게 되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조세법을 운용할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을 더 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과잉과세에 의해 국가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방안

- 동 조항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여 매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III.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개요

가) 상속세제 개편안

▶ 본 장에서는 상속세제 개편을 크게 3개로 나누고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하여 개편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표 11]에서 보듯이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하는 경우 미국식 개편안과 독일식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며, 폐지하는 경우는 캐나다식 개편안을 고려하였음.
- 개편안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50억 원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시 100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를 산정하였으며, 상속인은 자녀 1명과 배우자 1명으로 가정하였음.
- 상속자산가액 10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현행 상속세제를 적용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40.4%에 달함.
- 개편 1안은 미국식 개편안으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안임.
- 미국의 경우 평생 증여 합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1자녀 1배우자 기준의 공제한도가 55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공제한도 10억 원에 비해 5.5배나 큰 상황
- 우리나라가 10년 합산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공제 금액의 2배인 20억 원을 공제한도로 가정하였음.
- 미국과 같이 소득세와 동일한 상속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30.2%로 기준안에 비해 25.2%낮음.
- 개편 2안은 독일식 개편안으로 공제금액 한도를 독일과 같이 17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안임
- 최고세율을 30%로 할 경우 현행 종합소득세의 4단계의 누진구조를 적용할 수 있음.
- 즉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

만 원 이상 30%를 적용함.

- 이와 같이 개편할 경우 최고실효세율은 26.2%로 현행 대비 35%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편 3안은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과세로 전환하는 캐나다 방식과 동일함.
- 개편 1안과 개편 2안의 과세대상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원인 반면 개편 3안에서는 자산가액 상승분 50억 원이 과세대상이 됨.
- 캐나다는 상속시점을 양도시점으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¹³⁾
- 캐나다는 자본이득금액에 산입률 50%를 적용하여 4단계 세율(15%~29%)을 적용하고 있음.¹⁴⁾
-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효세율은 22%로 현행대비 45.6%감소
- 캐나다와 같이 산입률 50%을 허용할 경우 실효세율은 11%로 현행대비 72.8%감소함.¹⁵⁾

[표 11] 상속세제 개편안

(단위: 백만 원)

	기준안 (현행)		개편 1안		개편 2안		개편 3안	
			미국 Type		독일 Type		캐나다 Type	
과세대상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 공제(5억 원)	1,000.00	현행공제 대비 2배	2,000.00	현행공제 대비 1.7배	1,215.50	250만원	2.50
과세표준		9,000.00		8,000.00		8,784.50		4,997.50
납부세액	현행 5단계 상속세 누진세율 ¹⁾	4,040.00	현행 5단계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세율 38%) ²⁾	3,020.60	4단계 누진소득세율 (최고세율 30%) ³⁾	2,624.85	양도세율 20% + 지방세분 2%	1,099.45
실효세율 ⁴⁾ (%)		40.4		30.2		26.2		22.0 (11.0)
현행 대비 감소율 ⁵⁾ (%)		-		25.2		35.0		45.6 (72.8)

주: 1) 10억 4천만 원+(51억 2천 6백 9십 6만 7천 원-30억 원)×0.5

2) 현행 5단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으로 전환: 3,760만원 + (44억 1천 1백 9십 6만 7천 원-1억 5천만 원)×0.38

3) 현행 4단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으로 전환: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8,800만원 30% = 1,590만원+(87억 8천 4백 5십만 원-8천 8백만 원)×0.30

4)와 5) ()의 숫자는 캐나다와 같이 산입률 50%를 적용할 경우의 실효세율과 현행대비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음..

13) 주요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승영(2013) 참조

14) 자본이득은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세율은 15%(\$43,561 이하), 22%(\$43,561 초과 \$87,123 이하), 26%(\$87,123 초과 \$135,054 이하), 29%(\$135,054 초과)로 4단계로 구성됨.

15) 본 장에서는 산입률을 적용하지 않은 개편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나) 분석모형

▶ 본 연구는 Rasmussen and Rutherford(2004)과 조경엽(2007)의 세대중복형 모형을 분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상속세제 개편안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본 모형은 5세 간격의 연령집단(cohort)으로 구성된 i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Overlapping Generation Equilibrium Model)으로 분류됨.

- 경제주체는 미래의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한 예측능력(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
- 소비자는 생애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 및 저축 그리고 노동공급을 결정하며,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투자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결정함.

▶ 가계는 생애효용 극대 문제를 통해 생애 소비, 여가, 상속을 결정하며, 산업은 이윤극대화를 통해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함.¹⁶⁾

- 특정 기에 존재하는 i 세대는 21세부터 85세까지 5년 단위로 j 기간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5년을 주기로 2013년부터 2164년까지로 한정하였음.

- 완전예측능력과 유동성제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생애소득은 유산상속을 제외하고 생애기간동안 모두 소비되며,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는 미래의 소득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도 자유로움

- 정부는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법인세), 소비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여 세수입을 얻고 이를 정부지출과 가계이전으로 사용함.

▶ 본 모형은 순수교환과 joy-of-giving라는 2개의 상속동기를 혼합한 모형으로 분류됨.¹⁷⁾

16) 수식을 통한 자세한 모형 설명은 조경엽(2007) 참조

17) 상속세는 유산상속의 동기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산상속의 동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① 첫 번째는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자손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는 이론(accidental bequest model)임.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남는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적어도 피상속인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이때 부과되는 상속세는 일괄세(lump-sum tax)로서 피상속인의 효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수입만 증가하는 결과 초래함. 그러나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로 인해 감소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달리 상속인은 상속세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의 당위성은 상속세로 인해 감소한 상속인의 효용과 증가한 정부 세수입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됨. ② 두 번째는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pure altruism model)로서 부모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와 자녀의 효용으로 구성됨.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소비를 한 단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상속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녀의 소비에 대한 한계편익이 같은 점에서 상속을 결정함. 부모는 자녀의 기본재산에 따라 상속을 차별화함으로써 모든 자녀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의 효용을

- 부모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하였음.
- Bernheim et al.(1985)과 Cox(1987)가 제기한 바와 같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컨트롤하고 교환으로부터 잉여를 최대한 얻기 위해 부모는 마지막 기에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함.
-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확률은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20세~30세는 11.3%, 30세~40세 27.4%, 50세~60세는 11.5%로 가정함.¹⁸⁾

[표 12]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인원	
	명	비중
10세 미만	1,875	2.3
10세 이상	3,544	4.4
20세 이상	9,183	11.3
30세 이상	16,049	19.8
40세 이상	22,160	27.4
50세 이상	17,785	22.0
60세 이상	9,289	11.5
기타	1,108	1.4
합계	80,993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 기준연도를 201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업연관표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였음.

극대화하는 방법임.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에서 상속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창출함. 따라서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불해야 함. ③ 세 번째는 순수교환(pure exchange) 이론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이론임. 이러한 거래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임. 순수교환 이론에 따르면 상속세는 소비세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됨. 따라서 상속세의 크기는 자녀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높)다면 적정 상속세율은 상대적으로 높(낮)게 부과해야함. ④ 마지막으로 상속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joy-of-giving” 이론을 들 수 있음. 상속동기가 다르지만 순수 이타적 상속동기와 같이 상속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됨. 그러나 “joy-of-giving” 이론에서 문제는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임. 즉 부모가 상속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매우 큰 경우 두 세대의 소비를 줄이고 상속을 키우는 경우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음.

18) 이를 정규화하여 상속액이 연령별로 배분되도록 켈리브레이션 하였음.

[표 13] 사회회계행렬 2013년

		자본	노동	세금	상속	소비	투자	정부	대외거래
생산						727,800	416,000	214,467	778,521
자본	658,174								
노동	629,400								
세금	150,278	43,855	48,383		5,493				
상속						24,174			
소비		614,319	581,017		18,682			54,641	
투자						516,685		-21,100	-79,584
대외거래				248,009					
ROW	698,937								

2. 분석결과

가) 생애 소득, 노동, 소득변화

(1) 기준시나리오

- ▶ [그림 7]은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21세) 대표소비자가 현행 상속제도가 유지되는 기준안에서 생애 노동, 소비 및 소득경로를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음.

- 노동시간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21세는 총 할당시간의 36.5%를 노동에 투입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하여 36세~45세에 정점에 이르다가 감소하기 시작함.

- 65세가 넘어서면 총시간의 25%를 노동에 투입하다가 80세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함.

- 반대로 여가는 노동과 정반대로 36세~45세에 가장 적은 여가를 보내다가 이후 증가하여 80세 이후 모든 시간을 여가로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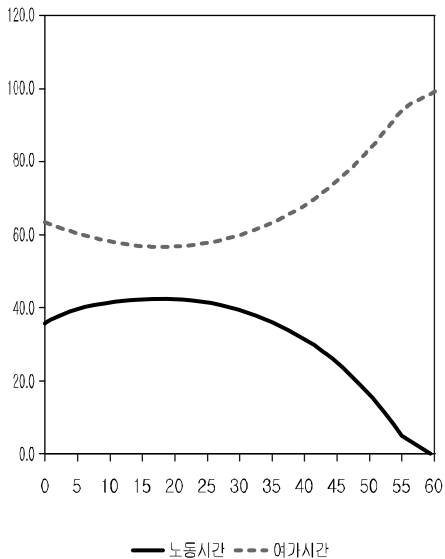
- ▶ [그림 8]은 기준연도의 소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생애소득 및 소비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음.

- 소비는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보다 생애전반에 걸쳐 변동폭이 크지 않다가 생의 마지막 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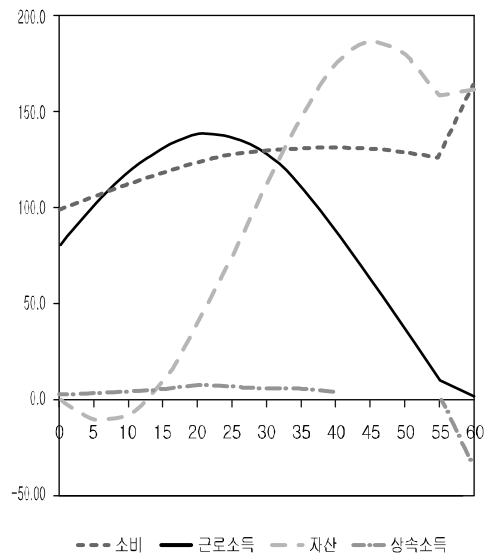
- 이는 소비 평탄화를 통해 생애효용을 극대화한다는 항상소득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마지막 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상속을 제외한 재산소득을 모두 소비해야하기 때문임.

- 노동생산성 변화와 같이 근로소득은 초기에는 점차 증가하다가 36~45세에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함.
- 생애초기에는 자본소득은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소득은 점차 커져 인생후반기에 정점에 이르게 됨.
 - 초기에는 근로소득보다 소비가 더 커 차입을 통해 부족한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21세~30세까지는 음의 저축을 보이다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55세 이후에는 근로소득 보자 자본소득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21세에서 60세까지 상속을 받고 있으며 생의 마지막기에 상속을 하기 때문에 음의 상속소득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7] 생애 노동과 여가시간 분포
(시간할당량 = 100)



[그림 8] 생애 소비 및 소득변화
(초기연도소비 = 100)



(2) 개편안별 생애 변화

▶ 개편 1안에 따른 생애 변화

- 상속은 5.7% 증가하고, 소비는 생애 평균 0.23% 증가하며, 노동시간은 0.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생애기간 축적된 자산(저축)은 소비 또는 상속으로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생애 평균은

영(0)으로 추정됨

- 연령별로 소비는 35세까지 감소하다가 45세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동의 경우는 상속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유인이 감소하여 40세까지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다가 45세 이후에는 상속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유인이 발생
- 저축은 30세까지 증가하지만 음의 저축이 줄어드는 정도이며, 30세 이후 감소하다가 마지막 기에 상속과 소비로 모두 지출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의 저축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편 2안에 따른 생애 변화

- 상속은 6.93% 증가하고 소비는 생애 평균 0.35% 증가하며, 노동은 0.12%, 증가할 전망이다
- 연령별 변화는 개편안 1안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는 기간에는 노동이 감소하지만 중장년에 들어서면 노동과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애 패턴이 변할 전망

▶ 개편 3안에 따른 생애 변화

- 상속은 7.6% 증가하고, 소비는 0.46% 증가하고, 노동은 0.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령별 변화는 개편안 1안과 2안과 유사한 패턴으로 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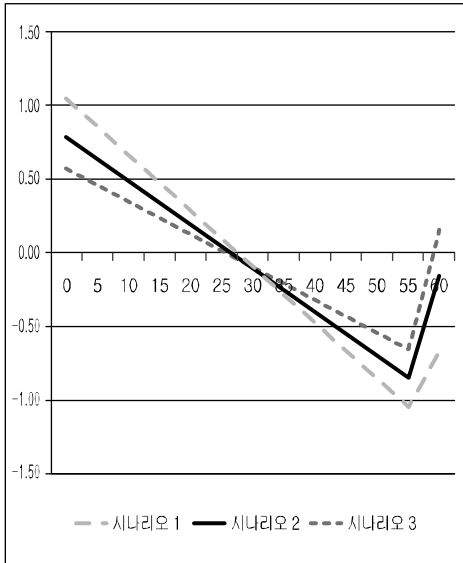
[표 14] 시나리오별 생애 변화

(단위: %)

	상속			피상속			소비			노동시간			저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0	5.54	6.69	7.29				-0.38	-0.55	-0.76	-0.53	-0.77	-1.05			
5	5.54	6.69	7.29				-0.33	-0.48	-0.66	-0.31	-0.46	-0.63	1.47	2.35	3.47
10	5.54	6.69	7.29				-0.20	-0.29	-0.40	-0.24	-0.35	-0.48	0.03	0.01	-0.03
15	5.54	6.69	7.29				-0.08	-0.11	-0.16	-0.16	-0.24	-0.33	-1.02	-1.51	-2.09
20	5.54	6.69	7.29				0.04	0.05	0.07	-0.08	-0.13	-0.18	-1.65	-2.53	-3.60
25	5.54	6.69	7.29				0.14	0.21	0.27	0.00	-0.01	-0.02	-3.79	-5.73	-8.05
30	5.54	6.69	7.29				0.24	0.35	0.47	0.08	0.11	0.15	-3.64	-5.39	-7.44
35	5.54	6.69	7.29				0.34	0.49	0.66	0.16	0.24	0.32	7.58	11.23	15.50
40	5.54	6.69	7.29				0.43	0.62	0.85	0.25	0.36	0.49	3.83	5.59	7.62
45							0.52	0.75	1.03	0.34	0.49	0.66	2.85	4.10	5.51
50							0.61	0.88	1.20	0.42	0.62	0.84	2.30	3.32	4.48
55							0.69	1.01	1.38	0.51	0.75	1.02	1.99	2.88	3.89
60				5.7	6.9	7.6	0.31	0.50	0.72	0.13	0.24	0.37	-10.30	-15.02	-20.44
합계	5.54	6.69	7.29	5.70	6.93	7.62	0.23	0.35	0.46	0.10	0.12	0.18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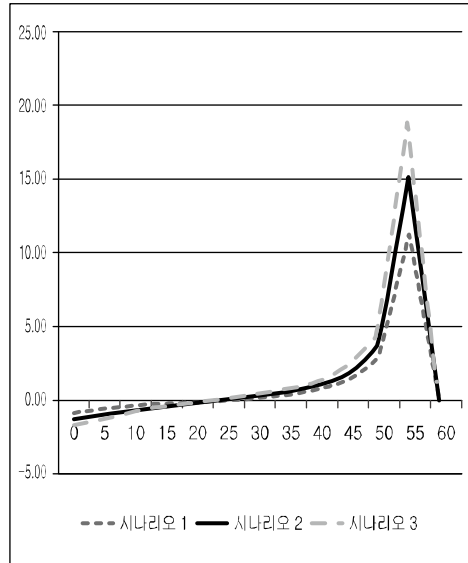
[그림 9] 시나리오별 생애 소비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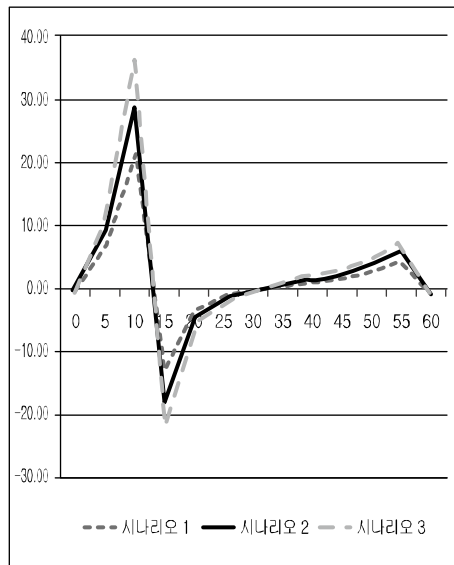
[그림 10] 시나리오별 생애 노동시간 변화

(단위: %)



[그림 11] 시나리오별 생애 저축변화

(단위: %)



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상속세 개편은 고용, 경상수지, 내수, 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상속세 개편은 저축을 늘리고 자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고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표 15]에서 보듯이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59,687개 ~ 110,711개에 달하고, GDP 증가효과는 0.14% ~ 0.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모형에 노동시간과 노동자 수가 분리되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노동시간 증가가 기존의 노동인력이 근무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인지 고용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속세 개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일인당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2013년 상용 근로자 1천 2백 3십만 명에 개편안별 노동시간 변화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약 59,687개 ~ 110,711개에 달함
-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은 노동시간 증가보다 작은 0.11% 증가에 그칠 전망
- 상속이 증가하면 대내적으로는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의 유출이 줄어들고 유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저량(stock)이 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자본소득은 0.15% ~ 0.3%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1.24% ~ 2.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동소득, 자본소득, 상속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데, 개편안에 따른 소비증가는 0.17% ~ 0.3%에 달할 전망이다
- 상속세 개편으로 소비, 투자, 수출입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GDP 증가는 0.14% ~ 0.28% 증가할 전망이다
-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근로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세수 감소는 연간 7천억 원 ~ 1조 3천8백억 원에 그치고 있어 GDP증가를 고려하면 큰 폭의 감소가 아닌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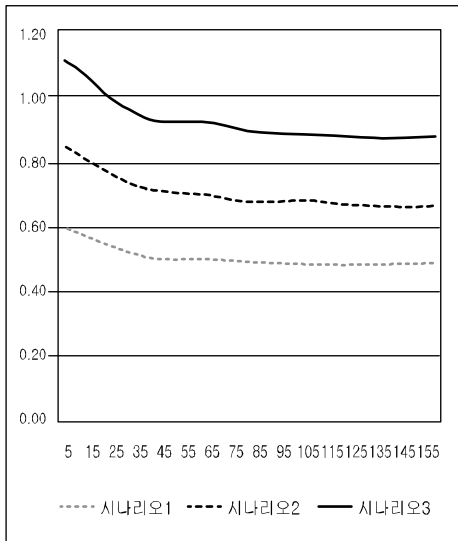
[표 15]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국민경제 변화(연평균)

		개편 1안 (미국식)	개편 2안 (독일식)	개편 3안 (캐나다식)
노동	노동시간 (%)	0.48	0.68	0.90
	일자리 (개)	59,687	84,176	110,711
	노동소득 (%)	0.11	0.16	0.22
지분소득 (%)		0.15	0.22	0.30
경상수지 (%)		1.24	1.81	2.46
소비 (%)		0.17	0.25	0.35
GDP (%)		0.14	0.20	0.28
세수입	상속세 (%)	-21.0	-30.7	-41.6
	기타세수입 (%)	0.11	0.15	0.21
	총세수입 (%)	-0.35	-0.51	-0.70
	총세수입(10억원)	-697	-1,017	-1,380

주: 일자리는 2013년 상용 근로자 12,324,186명에 노동시간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정. 노동시간은 고용인원이 증가하거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때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인당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추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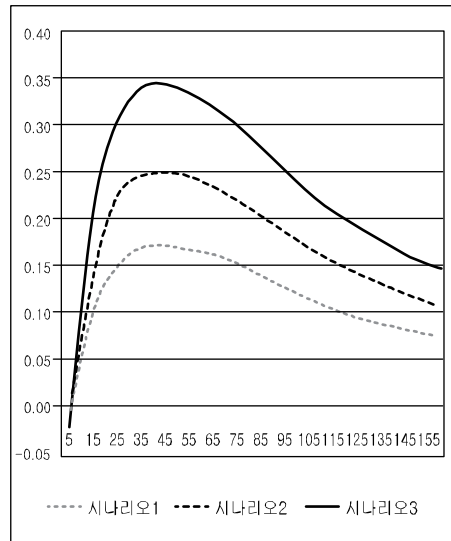
[그림 12] 시나리오별 노동시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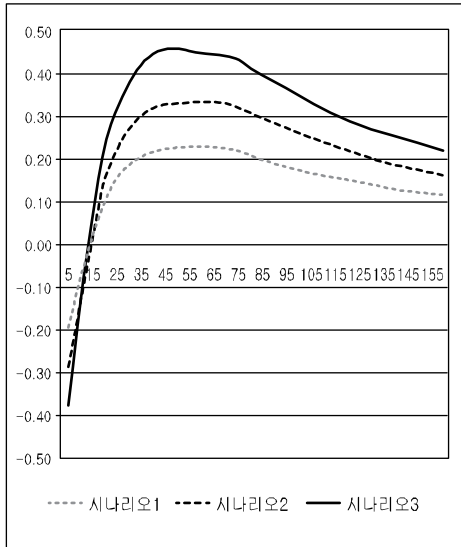
[그림 13] 시나리오별 노동소득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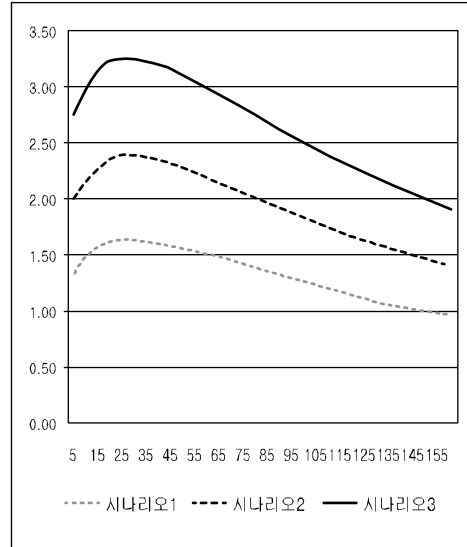
[그림 14] 시나리오별 자본소득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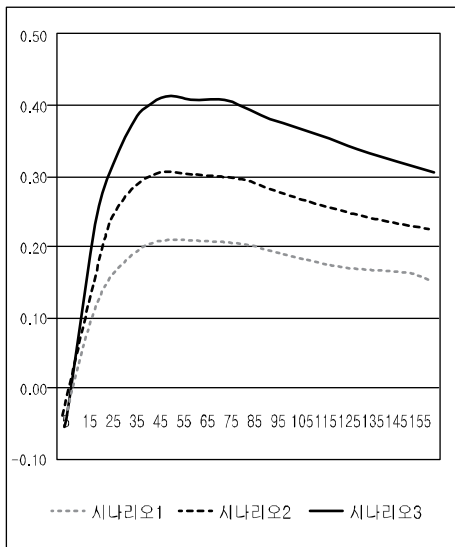
[그림 15] 시나리오별 경상수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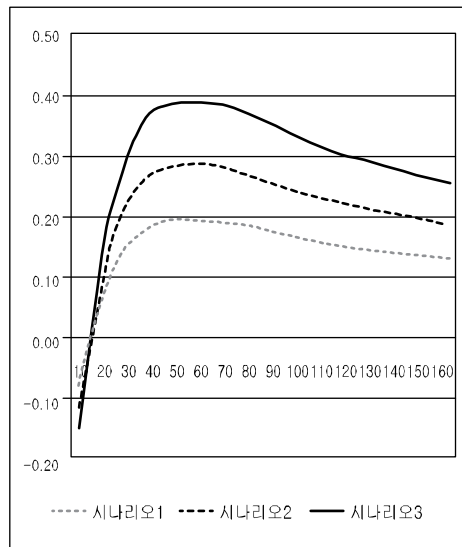
[그림 16] 시나리오별 소비 변화

(단위: %)



[그림 17] 시나리오별 GDP 변화

(단위: %)





IV. 결론

▶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부가 축적되었을 거라는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작용한 결과임.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음.

▪ 적정상속세는 형평성의 한계편익과 효율성 상실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을 고려하면 적정상속세는 매우 낮아 지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¹⁹⁾

-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계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조항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최고 수준이며, GDP대비 상속세부담은 OECD국가 중에서 4위,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조항을 도입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상속과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이 커지고 있음.

▶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3개국뿐이며, 공제금액도 낮아 상속세의 실효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보다 12%p 높아 세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강조되고 비정상적으로 부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피상속인이 회피한 소득세를 정산한다는 관점에 치중된 결과임.

- 공제금액은 독일 12억 원, 일본 23억 원, 미국 55억 원에 비해 낮아 실효세율부담이

19) Slemrod and Yitzhaki(2001)과 Kaplow(2001) 참조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행 상속세를 유지한다면 불합리한 상속세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낮게 유지하는 미국식과 독일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제금액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물가에 연동시킴으로써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증여공제와 상속공제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증여를 통한 취업난 해소와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음.

▪ 독일과 같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고 건강한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함.

-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거나 독일과 같이 상속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해야 함.

▪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음.

- 상속증여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불합리한 상속·증여제도의 개선과 폐지는 시급한 과제임.

▪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가능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경제활동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 전환 필요

▪ 응능부담원칙과 부의 분산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겠다는 상속세 취지에 위배되는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이 필요함.

▪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증세 폐지, 사망전 재산처분 금액 등의 상속재산 합산제도에 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서 과세관청으로 전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 과세 폐지,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폐지, 증여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폐지,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폐지가 요구됨.

▶ **그동안 상속과세 폐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인프라의 미비 문제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면서 해결되고 있어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상속세 반대론자조차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하는데 만족할 정도의 자본이득과세 장치를 정비·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 그러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

제가 정착되고 있음.

- 캐나다와 같이 상속을 양도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야기되는 납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자본이득과세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연구에서 제안한 미국식-독일식-캐나다식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를 정착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상속세 개편은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고용은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 개에서 1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됨
- GDP는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천억 원에서 1조 3천 8백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GDP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정승영,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KERI 정책제언 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정승영,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KERI Brief 13-23,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정승영·김재준,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조경엽·최명근,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최명근,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법제처,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재정부, 「2015 조세개요」, 2015
- 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2015
- 기획재정부, 「2016 조세지출예산서」, 2015
- 중소기업중앙회, 「2015 가업승계핸드북」, 2015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년도

[해외문헌]

- Cox, Donald,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1987, pp. 508-46.
- Bernheim, B. Douglas, Andrei Shleifer, and Lawrence H.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985, pp.1045-76.
- Kaplow, Louis,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 and Gift Taxation”, Gale William G. and Joel Slemrod e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1.
- Rasmussen Tobias N. and Rutherford Thomas F., “Modeling Overlapping Generation in a Complementarity Format”,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28(7), 2004, pp. 1383~1409.
- Slemrod, Joel and Shlomo Yitzhaki, “Integrating Expenditure and Tax Decisions: The Marginal Cost

of Funds and the Marginal Benefit of Projects”, National Tax Journal 54(2), 2001, pp. 189~201.

OECD, “Tax Administration 2015”, 2015.

OECD, “Transfer and Recurrent Wealth Taxes in OECD Countries”, Revenue Statistics 2013, 2015.

[부록]

[표 1] 상속세 결정 현황 및 유효세율

(2013년 기준)

	피상속인수 (1)	상속재산 가액 소계 (2)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3)	상속세과세 가액 (4)	상속공제 소계 (5)	과세표준 (6)	산출세액 (7)	세액공제 (8)	총결정세액 (9)	증여포함 세부담		유효세율 (12) = (9)/(2)
										세부담비중 (산출세액 기준) (10)	유효세율 (11) = (7)/(4)	
총상속재산 가액규모별	6,275	8,648,595	1,990,409	9,517,587	4,382,223	5,135,364	1,757,290	468,313	1,362,989	100.0	18.5	15.8
1억 원 이하	206	1,584	12,673	13,411	6,357	7,054	712	672	47	0.0	5.3	3.0
3억 원 이하	1,261	44,989	175,529	213,796	99,729	114,067	13,514	12,551	1,064	0.8	6.3	2.4
5억 원 이하	442	87,868	87,955	170,162	102,842	67,320	10,097	8,527	1,848	0.6	5.9	2.1
10억 원 이하	1,189	707,503	198,221	845,459	582,561	262,898	43,670	23,504	22,530	2.5	5.2	3.2
20억 원 이하	1,843	2,288,318	380,538	2,409,021	1,627,966	781,055	159,916	48,796	119,347	9.1	6.6	5.2
30억 원 이하	680	1,431,727	248,638	1,468,480	756,323	712,157	189,662	45,241	152,588	10.8	12.9	10.7
50억 원 이하	360	1,215,685	209,218	1,249,393	514,115	735,278	241,600	51,611	200,693	13.7	19.3	16.5
100억 원 이하	201	1,148,166	247,270	1,198,059	392,199	805,860	315,347	69,643	256,452	17.9	26.3	22.3
500억 원 이하	87	1,374,440	245,364	1,447,451	279,136	1,168,315	545,139	117,104	444,238	31.0	37.7	32.3
500억 원 초과	6	348,315	185,003	502,355	20,995	481,360	237,633	90,664	164,182	13.5	47.3	47.1

주: 유효세율 (10) : 증여를 포함한 총 이전재산가액에 증여세 공제 이전의 산출세액으로 나눈 세율로서 재산이전으로 지불한 총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유효세율 (11) : 증여된 재산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상속가액에서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제외하고 상속시 납부할 세액을 나누어 추정한 세율

[표 2] 증여 결정 현황(2013년)

(단위: 명, 백만 원, %)

	결정인원 (1)	증여재산가액 (2)	증여세과세가액 재차증여가산액 (3)	증여재산 공제 소계 (4)	과세표준 (5)	산출세액 (6)	총결정세액 (7)	재차증여 포함		총결정세액 기준 유효세율 (10)
								세부담 비중 (산출세액 기준) (8)	유효세율 (9) = (6)/(3)	
총증여재산 가액규모별	109,644	15,657,301	23,492,537	3,100,651	20,391,015	5,536,700	4,129,573	100.0	23.6	26.4
1천만 이하	19,200	79,229	80,455	12,157	68,295	6,830	6,897	0.1	8.5	8.7
5천만 이하	32,567	897,604	971,094	428,040	543,031	54,771	54,366	1.0	5.6	6.1
1억 이하	20,801	1,365,865	1,506,695	419,506	1,087,174	110,527	103,660	2.0	7.3	7.6
3억 이하	20,760	2,831,466	3,274,999	417,952	2,856,927	384,308	345,233	6.9	11.7	12.2
5억 이하	5,823	1,659,639	2,200,079	175,684	2,024,185	353,536	289,417	6.4	16.1	17.4
10억 이하	6,462	2,825,639	4,377,359	1,099,589	3,277,605	676,841	523,390	12.2	15.5	18.5
20억 이하	2,595	1,849,787	3,415,678	401,163	3,014,457	817,637	598,684	14.8	23.9	32.4
30억 이하	741	992,715	1,791,744	118,256	1,673,356	525,242	340,978	9.5	29.3	34.3
50억 이하	459	729,134	1,711,472	19,529	1,691,837	638,352	326,273	11.5	37.3	44.7
50억 초과	236	2,426,223	4,162,962	8,775	4,154,148	1,968,656	1,540,675	35.6	47.3	63.5